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인 쇄 2007년 12월

발 행 2007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51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2275-5326)

인 쇄 처 도서출판 늘품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
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 임을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6)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48-1 93340 : 비매품

320.911-KDC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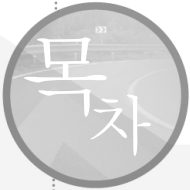
330.9519-DDC21

CIP2007004153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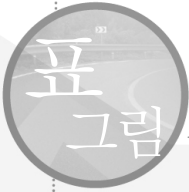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 서론	1
II. 국제금융기구의 범주와 주요 역할	5
1. 국제금융기구의 범주	6
2.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역할	11
3.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노력	13
III.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17
1. 국제정치적 조건	18
2. 정책 및 제도적 조건	20
3. 법적 가입 절차	21
IV. 국제금융기구의 개입 시나리오:	
지원 순서, 수단 및 규모 예측	27
1. 개입 시나리오	28
2. 금융지원의 대상과 절차	30
3. 금융지원 원칙과 규모: 북한 적용	34

V. 주요 쟁점 및 과제	41
1. 주요 쟁점과 시사점	42
2. 향후 과제	49
VI. 결론	59
참고문헌	63
최근 발간자료 안내	67



목차

- <표 III-1> 국제금융기구(IFI) 가입, 투표권, 지분(2006년 현재) … 23
- <표 IV-1> WB의 최근(회계 연도 02~05) 대출 규모 …… 35
- <표 IV-2> 정책 건전성과 ODA 및 IDA 일인당 원조액 …… 38



서론

6자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로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원국가 지정 해제 등이 2009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 또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더불어 북한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문제를 비롯해 북·미 및 북·일 간 관계정상화 논의도 시작될 것이다. 특히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과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및 국제경제시스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적 국제협력방안의 하나로써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²

기본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가입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중요하다. 실제로 향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 등 주요 주주국가들(shareholders)의 요청에 의해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동시에 개혁·개방정책의 정착 및 심화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국제금융기구의 개입 조건,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¹- 2007년 10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2단계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문서(II-1)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또한 양측은 양자 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북한을 테러리즘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²- 안광명(재정부 경제협력국 개발전략심외관),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한국수출입은행·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주최 제3회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을 위한 워크숍 토론문(2007년 11월 29일), p. 175.



정책과제를 논하는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자는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에서 저개발국과 사회주의권 나라들을 대상으로 개발지원을 수행했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도하고, 국제금융기구의 북한개입관련 다양한 논문과 저서들을 참고하면서, 이들의 견해를 최대한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의 문헌 의존성을 탈피하면서 사실 검증과 미래 전망을 통해 논문내용의 현실정합성과 정책적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동시에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중국 개입과 협력사례 등과도 비교하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들,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지원 수단, 그리고 정식 회원가입 이전에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기 위한 북한과 남한의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금융기구의 실제와 개입 시나리오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초기 북한 개발지원 단계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역할과 기능도 함께 다루었다.

I

II

III

IV

V

VI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국제금융기구의 범주와 주요 역할

1. 국제금융기구의 범주

북한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주목할 국제금융기구는 크게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일 것이다.³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2차 대전 후 유럽 재건과 재정적 지원, 그리고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 뒤 두 기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개발문제와 함께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중국, 베트남의 개혁·개방 촉진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가.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따라 국제연합(UN)의 전문기관으로서 유럽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세워져 1945년 관계 국가들의 정식가입을 거쳐 1946년 6월에 업무를 개시하였다. 주요 역할은 첫째, 회원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사회개발에 기여하고, 둘째,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하며, 셋째,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은 회원국의 지분할당에 의한 자기자본, 특별준비금, 차입금(세계은행채의 발행으로 조달), 투자이윤 등으로 이루어진다.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에 초점을 맞추면서⁴

3- 국제금융기구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도 있으나, 초기에 북한 경제개발지원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4- World Bank Group, "Working for a World free of poverty," presentation for participants of Diplomatic Course at the Foreign Services Academy (March 2, 2005), p. 4.

농촌 및 지역개발, 부패퇴치, 부채경감, 교육, 경제조사 및 통계, 에너지, 금융, 성, 세계화, 거버넌스, 정보기술, 인프라, 노동보호, 사회개발, 무역, 수송 등 세계은행이 관여하고 있는 개발 의제는 광범위하다.⁵

세계은행은 그룹(group)으로 불리는데 크게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과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IBRD와 IDA는 세계은행을 구성한다.⁶

IBRD는 국제금융기구의 중심적 기관이며, 엄격한 용자조건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하드론(hard loan)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은 IBRD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없다. IBRD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만 차관을 제공한다. IBRD의 차관은 상업이자와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수반한다. 이러한 차관은 되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국가에게만 제공된다. 따라서 IBRD의 채무국가들(borrowers)은 민간자본시장에도 접근할 수 있는 중간소득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IBRD의 엄격한 용자 조건을 따를 수 없는 저개발국, 주로 1인당 GNP가 US \$1,025 미만의 가난한 나라들을 위하여 IDA를 따로 조직하여 이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⁷

⁵- *Ibid.*, pp. 109-144.

⁶- The World Bank, *A Guide to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3), pp. 10-11.

⁷- Daniel Morrow,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Proceedings for 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stin Chosun Hotel, Seoul, July 6-7, 2006), p. 5.

IDA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양허적 자금공여를 목적으로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IBRD 회원국에 한하여 가입 자격을 부여한다. IDA의 주요 기능은 저개발국에 대한 장기 자금 용자로 가맹국의 출자 출연금 및 IBRD로부터의 이전수입(replenishment)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40년 상환 기간에 무이자로 용자를 제공해주고 있다. 국제금융공사(IFC)는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1956년에 설립된 국제투자기관으로 세계은행의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금융공사가 행하는 투자는 정부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세계은행이 제안한 해외투자 관련 리스크(risk)를 담보하기 위한 국제보험기관으로 세계외채문제의 해결에 공헌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IFC는 사적 부문에 대한 지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 적합한 지원창구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등으로 북한에 기업경제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BRD 및 IDA는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에 차관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현 시점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지원의 유력한 창구라고 볼 수 있다.

나. 국제통화기금(IMF)⁸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1944년 6월 브레튼우즈(Bretton-Woods)에서 조인된 국제통화기금협정에 의거하여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6년 32개 회원국들의 환율등급 결정 후인 1947년 3월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회원국은 각각의 할당액(SDR Quota)을 출자하고 있으며, 이 할당액(쿼터의 몫)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또 이 할당액은 각 회원국이 IMF의 자금을 이용할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자금은 특별인출권으로(Special Drawing Rights, SDR) 표시된다. IMF의 주 목적은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회원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외환시세의 안정, 외환제한의 제거, 자금의 지원(회원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되었을 경우) 등의 하위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IMF는 아시아 및 러시아에서의 금융위기의 발발과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금융부문 규제, 기업지배구조, 정책투명성과 책임성 같은 이슈들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혹은 “제도적인 이슈”들에 주목하고 있다.⁹ 또한 세계은행과의 협력 아래 기준과 법령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¹⁰ IMF는 거시경제운용을 주도하는 반면, 세계은행은 전반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민간부문을 육성하

⁸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IMF의 홈페이지 참조 <<http://www.imf.org/external/about.htm>>.

⁹ - *Ibid.* 또한 IMF, *Review of the Fund's Experience in Governance Issues, Policy Development and Review Department* (IMF, 2001), p. 25; 다른 정책 사안으로는 i) 환율, 통화 및 회계 정책; ii) 금융 부문 문제; iii) 위험 및 취약성 평가; 그리고 iv) 구조 정책 등이 있다. 총체적인 자문에 있어서 거버넌스 관련 자문에 대한 논의 비율은 1994년 18%에서 1998~1999년에 62%로 증가했다.

¹⁰ - *Ibid.*, pp. 25-28.

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다. 아시아개발은행(ADB)¹¹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촉진과 역내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66년 8월 설립되었다. ADB는 지역 내 개발투자 촉진, 역내개발을 위한 투자, 역내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조정, 기술지원공여,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개발을 위한 각종 자금을 융자하거나 직접투자를 하는 등 개발자금 투·융자 기능과 개발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자문용역, 학술연구 등의 분야에 대한 유·무상의 기술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자본금과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ADF) 출연액,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다. 경제개발 및 기술지원 자금의 융자대상은 아·태지역의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으로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한 국가에 한한다. 필리핀의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ADB는 세계은행의 IDA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ADF)을 운영하고 있다. ADF 차관은 35~40년 만기의 연간 수수료 1%를 제외한 별도의 이자를 물지 않는 대출금이다.

ADB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은행으로부터 개발원조를 받는 과정은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체제전환 국가 가운데 중국, 몽고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원을 받았고, 창설 회원국인 아프가니스탄, 캄

¹¹ - 아시아개발은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http://www.adb.org/About/default.asp>> 참조.

보디아, 베트남의 경우에는 은행의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체제전환 이후 은행의 지원이 재개되었다. 1986년 가입한 중국은 세계은행이나 일본의 민간은행 등으로부터 이미 개발원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ADB 가입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지난 수십 년 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들 성공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ADB와 같은 역내 개발공동체의 일원으로 참가하면서 자원 이전을 받았다는 점이다.¹²

2. 국제금융기구의 주요 역할

국제금융기구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등을 통한 글로벌화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제금융기구는 체제전환시 소요되는 자본조달의 중요한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오랫동안 국제금융기구가 축적해 온 개발지원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개입여부와 평가가 추후 체제전환 국가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금융기구의 활동과 평가 여하에 따라 해외자본의 도입여부와 규모가 크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¹³

일반적으로 원조는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거액의 원조를 지원 받고 있는 극히 빈곤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외 원조가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으나 민간 투자

¹²- Mitsuru Mizuno, "Japan's Development Assistanc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co-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Seoul, Korea, July 6-7 (2005).

¹³- 윤대규, 『법제도개혁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6), p. 12.

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환경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어야 하며, 국제금융기구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해당 정부를 지원해 왔다.

IMF는 해당 국가의 거시 경제 정책을 검토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시 경제 정책 개선을 위한 회원국에 대한 자문, 경제 위기 시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금융 지원을 담당하며, 정책 개혁 수행도 지원한다. IMF의 지원에 관계없이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은 많은 원조 제공 자국이 IMF의 거시 경제 평가 자료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며, 특히 IMF가 해당국의 거시 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경우 원조 제공을 꺼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곧 거시 경제 정책이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원조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 인위적이고 왜곡된 환율 정책을 유지할 경우 프로그램원조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금융기구는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오랜 활동을 통하여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국제금융기구가 수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같은 대부의 형식, 장기 저리의 차관, 무상원조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국제금융기구는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수원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이나 현장실습, 또는 인력양성 등 여러 가지 부대적 요건이나 환경을 갖추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¹⁴

¹⁴- 이러한 지원을 통틀어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technical assistance loan을 institution/capacity building loan이라고도 부른다.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는 다른 지원단체로부터 오는 지원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만약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면 많은 다자·양자적 지원단체들로부터 개발지원을 위한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으로 결정되는 원조(political aid)는 통상적으로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분석과 엄격한 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금융지원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에 의한 지원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세계은행이 지원 통합조정에 관여하고 세계은행이 이러한 지원금의 흐름을 검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경제적 합리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노력

북한은 1991년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모색해왔다. 북한은 IBRD나 IMF보다 먼저 ADB 가입을 희망했다.¹⁵

국제금융기구들과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평양에 현지조사단을 보낸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간헐적이고 비공식적인 형태로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IMF의 북한방문 조사결과는 *DPRK Fact - Finding Report*(1997.11.12)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들은 북한에 기술지원,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

Ibrahim F. I. Shihata, *Contemporary Reform: Essays on Legal, Judicial and Other Institutional Reforms Supported by the World Bank* (Kluwer Law International, The Hague, 1997), p. 17 참조.

¹⁵ - 일중동북개발협회, 『조선북부항만시찰단보고서』 (1992년 3월), pp. 91-92.

I
II
III
IV
V
VI

는 분야로 기본적 거시 경제 통계 작성, 금융시스템 개혁, 재정 개혁, 대외 부채 문제, 법적 개혁, 거시 경제 정책 구성 등을 제시했다.¹⁶

북한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1997년 4월 북한은 ADB에 가입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중국, 한국 및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은 북한의 회원가입을 지지하여 왔으나 이 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ADB 가입을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미국과 일본은 공식적으로 북한이 테러리스트 지원국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한 법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ADB 회원가입에 강한 의욕을 보여 왔으며, 2000년 8월 북한 무역성 김룡문 부상이 ADB 총재에게 편지를 보내 가입 의사를 재표명하였다. 2001년에는 IMF, IBRD 가입의사도 다시 표명한 바 있다.¹⁷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미국과 일본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미국 정부는 1988년 이후 북한을 국제 테러지원국가로 지명한 이래 지금까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거부해 왔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게 테러리즘, 미사일개발 및 핵개발 문제 등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현안에서 납득할만한 결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키면서 미국으로

¹⁶ - Kenneth Kang,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Assistnace to North Korea,"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남북협력』, 통일연구원·UNESCO 한국위원회 공동 주최 학술회의 (2001. 9).

¹⁷ - 『한국경제신문』, 2001년 3월 12일.

부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를 보상으로 받아내려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고, 이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⁸

I

II

III

IV

V

VI

¹⁸- 2006년 9월 평양을 방문했던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에 합의하고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피하지 않는다는 적대정책 완화의 구체적인 증거를 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그 사례로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같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지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AP』 (2007.9.27).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국제금융기구의 일반적 금융지원은 회원국에게만 제공된다. 이는 그 밖의 지역적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금융/비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이 아래와 같은 세가지 측면의 조건을 일정 수준에서 충족시킬 경우 본격적인 개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 국제정치적 조건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여부는 회원국들의 충분한 정치적 지지에 달려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은 핵문제의 해결 진전 등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핵심 관건으로 지적된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국제금융기구 회원 가입 과정도 미국과의 관계개선 과정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¹⁹ 실제 북한의 핵폐기와 연관된 경제지원은 정치적 원조(political aid)의 성격을 띠 가능성이 있다.²⁰

즉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6자회담의 성공적인 해결이 전제되어야 가입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전 단계인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불능화조치뿐 아니라 제2차 북핵 위기의 발단이 된 농축우라늄

¹⁹ -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24.

²⁰ - 장형수,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의 비전과 전망』, 산업연구원 주최 자료집 (2007년 11월 22일), p. 56.

(UEP)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한 분명한 해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거나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북한을 빼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²¹ 이처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포괄적인 경제지원방안을 비핵화 등 군사안보적 의제와 연관시키는 ‘대타협’의 일환으로 북한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ADB 가입은 핵 문제와 더불어 일본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납치문제 등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1979년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가능해졌고, 회원국 자격은 1980년에 획득하였다. 1986년 베트남정부는 경제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로 한동안 매우 제한된 외국인 투자만을 받아들여야 했다. 개혁·개방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은 1991년부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했고, 1993년 마침내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베트남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얻어냈다.²² 이에 따라 세계은행과 베트남정부 간 경제정책 대화창구가 개설되고, 금융지원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세계은행과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 개선이 주는 시사점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 문제 해결 등을 통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면 정치체제 변화 없이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의 충분한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²³

²¹- 『연합뉴스』, 2007년 11월 6일.

²²-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p. 65.

I
II
III
IV
V
VI

2. 정책 및 제도적 조건

역사적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정치적 환경뿐만 아니라 가입을 희망하는 개별 회원국들의 정책과 제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전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도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국제금융기구가 북한 가입 승인이나 지원과정에서 정책과 제도적 측면을 어느 정도 고려할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5월 전 세계은행 총재인 월포위츠(Paul Wolfowitz)의 기자회견 내용이 주목할만하다. 그는 북한이 참조할 모델로서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중국이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등소평의 지도 아래 경제개혁에 착수했을 때 세계은행은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기술지원까지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선결조건은 이러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중국정부가 경제정책의 변화를 착수하는 리더십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급진적·정치적 변화 없이도 경제발전은 가능하다면서, 북한에서도 리더십의 경제개혁의지와 실천이 이어진다면 세계은행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북한개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조는 6자회담 진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조건과 더불어 북한의 경제개혁 심화 여부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선행조건임을 강하게 암시한다. 북한의 경우 시장경제체제로 공식적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지도자 수준에서 지속성 있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²³- Press Conference at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Japan, Tokyo, May 29, 2006 <<http://www.worldbank.org>>.

북미 금융실무그룹회의(11.29~20)에서 미국측 대표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중단을 비롯해 국제금융체제에서의 공인된 규범과 기준 등 국제금융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설명한 한 대목을 통해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즉 북한이 국제규범에 맞게 내부의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샘 브라운 백 의원 등 4명의 미 상원의원은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에 달성해야 할 전제조건들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한국인 전범 600여 명에 대한 행방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²⁴ 물론 미 의회 결의안은 정부측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래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미국이나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조건으로 인권개선이나 기타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3. 법적 가입 절차

미국은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에 의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에 대한 지원반대 근거법은 반테러법(Anti-terrorism and Effe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으로 재무장관은 국무장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제공 또는 자금 지원시 반대입장을 표명하도록 해당 국제금융기구 미국 상무이사에 지시하여야 한다. 이 법이 테러지원국의 가입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공여에 반대하는 것은 동 기구 가입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미국은 가입자체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견지하

²⁴- U.S. Senator Sam Brownback Press Release, December 10, 2007.



고 있다.²⁵ 따라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라는 정치적, 법적 요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국제금융기구 회원자격 획득과정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특정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²⁶ IMF의 가입을 위해서는 총회 정족수인 총 투표권수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위원의 참석과 찬성이 필요하다. 투표권은 회원국들의 경제규모와 그에 따른 쿼터(Quota)에 맞게 주어지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아래 <표 III-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은 17.08%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²⁷ 이는 새로운 회원의 가입을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나머지 투표권은 회원국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데 일본 6.13%, 독일 5.99% 그리고 다음으로 규모가 큰 8개 회원국은 각각 2~5%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²⁵ - 안광명,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p. 177.

²⁶ - 폴 월포위츠 전 세계은행 총재도 북한의 가입은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Press Conference at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Japan, Tokyo, May 29, 2006 <<http://www.worldbank.org>>.

²⁷ - The World Bank, *A Guide to The World Bank*, p. 9.



<표 III-1> 국제금융기구(IFI) 가입, 투표권, 지분(2006년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IBRD	IDA		
설립연도	1945년 12월	1960년 9월	1945년	1966년
회원국 수	184개국 (2006년 5월 현재)	165개국 (2006년 5월 현재)	184개국 (2006년 5월 9일 현재)	65개국 (2006년 4월 30일 현재) -지역회원국: 47 -비지역회원국: 18
주요 지분국: 지분/투표권(%) 28	지분/투표권(2006년 3월 31일 현재) 1. 미국 (16.85%/16.39%) 2. 일본 (8.08%/7.86%) 3. 독일 (4.60%/4.49%) 4. 프랑스 (4.41%/4.30%) 4. 영국 (4.41%/4.30%) 기타: ▪ 중국 (2.85%/2.79%) ▪ 베트남 (0.06%/0.08%) ▪ 한국 (1.01%/0.99%)	투표권(2006년 5월 22일 현재) 1. 미국(13.40%) 2. 일본(10.36%) 3. 독일(6.65%) 4. 영국(5.06%) 5. 프랑스(4.1%) 기타: ▪ 중국(1.96%) ▪ 베트남(0.08%) ▪ 한국(0.60%)	쿼터/투표권 (2006년 5월 9일 현재) 1. 미국 (17.40%/17.08%) 2. 일본 (6.24%/6.13%) 3. 독일 (6.09%/5.99%) 4. 프랑스 (5.03%/4.95%) 5. 영국 (5.03%/4.95%) 기타: ▪ 중국 (2.98%/2.94%) ▪ 러시아 (2.79%/2.74%) ▪ 베트남(0.12%) ▪ 한국 (0.77%/0.76%)	지분/투표권 (2006년 4월 30일 현재) 지역 회원국 1. 일본 (15.7%/12.9%) 2. 중국 (6.47%/5.48%) 3. 호주(5.8%/4.9%) 4. 한국 (5.06%/4.36%) 비지역 회원국 1. 미국 (15.7%/12.9%) 2. 독일(4.3%/3.8%) 3. 프랑스 (2.3%/2.1%) 4. 영국 (2.02%/1.9%) 기타: ▪ 베트남 (0.3%/0.58%)
융자 기간	15~20년 3~8년	40년, 35년, 10년		
이자율	6개월 LIBOR + 0.50%	0.00%		

I
II
III
IV
V
VI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개발은행 (ADB)
	IBRD	IDA		
회원국 요구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RD 현장 ▪ IMF 회원국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A 현장 ▪ IBRD 회원국 ▪ Part I 회원: 주로 선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개발은행 설립 현장(제 3조) ▪ 유엔 아시아 및 극동아시아 위원회 회원국 또는 다른 지역 국가 및 유엔 산하 전문기관의 회원인 비지역 선진국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 ²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NI per capita USD 1,466 ~ USD 5,295(2003년 현재)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 II 회원국/차용국: 주로 GNI per capita가 USD 1,466 미만(2003년 현재)인 국가 ▪ 기타 		

자료: 윤대규, 『법제도개혁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관한 연구』, pp. 148-149를 토대로 일부 통계 수정보완

법적으로 세계은행의 규약에 따라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IMF의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관행상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가입절차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려면 IMF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IMF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IMF 총재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IMF 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에 따른 질서 있고 안정

²⁸- “지분”이라는 용어는 회원이 되고 투표권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 국가의 출연 자본(authorized capital stock)의 지분을 일컫는다.

²⁹- The World Bank, *IDA Eligibility, Terms and Graduation Polic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The World Bank, Jan. 2001), pp. 1-5; <http://www.worldbank.or.jp/01tokyo/01about_us/pdf_about_us/eligibility.pdf> 참조.

적인 환율제도 운용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로서 IMF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 총재가 가입신청서를 이사회에 회부하면 이사회는 Membership Committee(MC)를 구성하여 가입신청국의 경제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MC에서 조사한 가입신청국의 경제상황, 쿼터, 쿼터납입방법 등에 대한 보고서(가입국 동의)와 가입결의안을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위원(Governor)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을 의결한다. 회원국이 준수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 IMF 협정문 서명후 납입쿼터의 25% 이상을 IMF계좌에 예치하면 회원국 자격이 발효하게 된다.³⁰

문제는 심사과정이다. MC는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회원국이 되려는 국가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토론을 거치게 된다. 이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즉 현재 북한과 같은 정보공개 및 개혁수준으로는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의 성공적 해결로 북한의 가입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 뒤 북한경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북한의 적절한 출자금을 결정하는 기술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과거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자국 경제에 관한 경제데이터를 공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혜택을 얻는 것은 북한이 경제문제에 관하여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한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이 이런 변화에 적극적이라 가정하고 동구권이나 구소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이러한 정보공개와 쿼터와 기금에 대한 협상 그리고 가입을 승인하는 절차는 1년에서

³⁰- 안광명,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p. 181.

I
II
III
IV
V
VI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³¹ 정치적 목적이나 필요성에 따라 가입 절차를 밟는 시간이 조금 단축될 수도 있다.

ADB 경우는 ESCAP 가맹국과 UN 또는 UN 산하기구의 회원국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총재와 이사회가 비공식적으로 가입허용 여부를 검토한 후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가입희망국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출자금 규모와 납입방법 등을 ADB 집행부가 당사국과 협의·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ADB 전체 회원국의 2/3 이상, 총투표권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이 결정된다.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면 정식가입이 된다.³² ADB 가입 이전에 IMF나 세계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 요구조건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미국, 일본 등의 태도는 ADB 우선 가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³³

이처럼 북한이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이들 국제금융기구 모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따라서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실제로 세계은행, IMF, ADB 가운데 세계은행이 선도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은행은 북한에 대한 경제·사회적 현황 분석과 관련 정보 축적, 중단기적 개입가능분야 및 우선 개입 분야 등을 선정하기 위한 비공식국가팀(Informal Country Team)을 구성해놓고 있다.³⁴ 따라서 북한의 경우 우선 세계은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초기 수혜여건, 지원 종류와 조건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³¹- Daniel Morrow,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p. 4.

³²- 안광명,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p. 181.

³³- 세계은행 내부 비공개 자료(2003년) 참조.

³⁴- 위의 자료.



국제금융기구의 개입 시나리오:
지원 순서, 수단 및 규모 예측

이 장에서는 북한이 위에서 제기한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켜 국제금융 기구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된다면 국제금융기구는 어떤 원칙을 갖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은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한다면 당장 장기저리의 대규모 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일부 선행연구³⁵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원 사례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여 대규모 자금수혜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기대이고 주장인지를 북한 개입의 순서 혹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구체적인 금융지원 종류, 대상, 절차 그리고 실제적 북한 적용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개입 시나리오

선행연구들³⁶은 국제금융기구의 단계적 개입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국제금융기구 관계자들이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 협력한다해도 북한의 세계은행과의 역사적 관계 부족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정확한 사회·경제적 현황 파악, 상호학습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아래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노력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 등의 대주주들의 영향력 행사에 따라 단계별 추진 기간이 단축되거나,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³⁷

35-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의 국제금융체제복구에 따른 국제원조 재원현황 분석,” 『한국경제주평』 통권 제274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7) 참조.

36- Bradley O. Babson, “Implications of a bold switchover in security policy for involv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financing North Korean Development,” pp. 64-65; 세계은행 내부 비공개 자료(2003년) 등 참조.

37- 전 세계은행 chief economist와의 인터뷰(2007년 11월 28일).

- 1) 1단계: 통계 분야 등 교육과 훈련 활동³⁸, 포괄적인 경제평가와 개발전략 수립, 쿼터 배정 등을 위한 정책대화 및 가입협상(약 1년 소요)
- 2) 2단계: 우선순위 교육, 기술지원 제공, 각 분야와 제도에 대한 평가, 투자 전단계 연구작업 등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신탁기금의 조성
- 3) 3단계: IMF, IBRD, IDA의 회원가입과 북한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설립. IFC와 MIGA 가입(2단계와 중복될 수 있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이 단계가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음)
- 4) 4단계(장기): IBRD 차관 상황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

다른 국제금융기구 관계자의 개입시나리오는 보다 구체적이다. 지금까지의 저개발국 혹은 체제전환국 지원 사례와 경험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북한 개입은 다음과 같이 상호 학습과정을 포함하는 기술지원이 선행될 것이며, 프로젝트, 프로그램 원조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³⁹

- 1)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 2) 식량원조(Emergency/Food Aid)
- 3) 부채경감(Debt Relief)
- 4) 특정분야 프로젝트 투자
- 5) 제도구축을 위한 지원
- 6) 정부예산 직접지원(Government Budget Support)

I
II
III
IV
V
VI

³⁸- 통계수집 및 분석관련 교육은 나라마다 달랐다고 한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원 초기에 인구통계자료는 양호한 상태였다고 한다.

³⁹- 전 세계은행 chief economist와의 인터뷰(2007년 11월 28일).

체제전환국 등을 위한 부채경감으로 이는 주로 양자간 협상으로 진행 된다. 북한의 경우 적용여부가 불분명하나 검토는 필요하다. 북한이 미결제 외채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신용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외자 차입을 얻기는 불가능하다. 특정분야 프로젝트 투자는 산업부문 투자를 포함하여 빈곤감소를 위한 투자, 농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투자가 포함될 수 있다. 제도구축을 위한 지원은 장기적인 자본투자나 제도적인 발전, 또는 분야별 수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실제 최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보면 수원국에 대한 직접적 재정이전은 순서상 마지막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금융지원보다는 기술지원이 선행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의 경우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정부 예산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초 개입에서 15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⁴⁰ 즉 북한 당국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기술지원이나 프로젝트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 형태의 자금지원을 지원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2. 금융지원의 대상과 절차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은 투자프로젝트, 개발정책 운영, 기술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신탁기금을 포함한 무상지원(Grant Funding)을 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원조는 투자차관(Investment Lending)을 통해 특정 투자 부문, 예컨대 철도, 도로, 항만 건설, 병원건립 등 특정 사업을 위해 지원된

⁴⁰- 전 세계은행 chief economist와의 인터뷰(2007년 12월 1일).

다. 수원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주로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건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은행 차관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물리적인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개발, 공공정책 개발 등의 제도적 인프라 건설에도 투자되고 있으며, 비교적 장기간(5~10년)소요되는 활동을 주요 영역으로 한다.

보통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원국에 특별관리기관이 신설되기도 한다. 프로젝트 진행기간은 보통 3~7년 소요된다. 원조제공국은 프로젝트원조가 비용에 맞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그 성과가 비용에 비해 크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금융지원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때 이뤄지며, 사전에 지원이 제공되지는 않고 특정 재화나 서비스 비용 지불에 사용된다. 재화 및 서비스 조달은 사전에 동의한 원칙에 따르도록 한다. 아울러 정확하고 완벽한 회계 처리를 요구한다.

프로그램원조는 보다 폭넓은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지출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책기반차관(Policy-based lending)’이 있다. 이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출에는 관련되지 않은 대신 정부가 동의한 개혁정책 수행에 지원되는 원조 형태이다. 이는 ‘개발정책운영’으로 불리는 것으로 일련의 정책과 제도적 개혁 이행을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한다.⁴¹ ‘정책기반차관’(과거 ‘조정차관’으로 불림)⁴²의 경우 원조제공국은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동의

⁴¹ - 프로젝트원조와 프로그램원조에 대한 차이점 및 함의는 Paul Mosley and Marion J. Eechhout, "From project aid to programme assistance," *Foreign Aid and Development* (Routledge, NY: Taylor & Francis Group, 2000), pp. 131-153 참조

⁴² - 개발정책자금지원으로 통합된 자금으로 1) 구조조정 자금지원(Structural Adjustment Loan/Credit, SAL/C), 2) 분야별 조정 자금지원(Sector Adjustment Loan/

I
II
III
IV
V
VI

한 사항이 준수되는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호 동의한 개혁프로그램이 경제 성장과 빈곤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조제공국은 이러한 지원이 수혜국 정부의 책임 아래 투명하고 건전한 정책 지침을 바탕으로 지출되기를 기대하며, 조달(procurement)과 관련된 지침은 따로 마련된다. 프로그램원조는 회원국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트랑슈(tranches)’의 형태로 지급되며 재화 및 서비스 구입과 연계되지 않는다.⁴³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은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정부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한다. 즉 기술지원은 교육, 역량 강화 활동은 물론 정부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와 자문그룹의 지원을 위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무상지원의 형식은 기술협력합의(Technical Cooperation Agreement, TCA), 제도개발기금(Institution Development Facility, IDF), 개발공여기금(Development Grant Facility, DGF), 신탁기금공여(Trust Fund Grant, TFG) 등이 있다.

모든 형태의 지원에는 프로젝트원조와 프로그램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 즉 아이디어와 전문성 제공이 함께 이루어진다. 국제금융 기구는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단지 금융지원뿐 아니라 보다 나은 프로젝트 개발, 정책과 제도의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지 특정 프로젝트의 성과는 물론 전체 거시 경제 환

Credit, SECAL/ SECAC), 3) 프로그램적 구조조정 자금지원(Programmatic Structural Adjustment Loan/ Credit, PSAL/C), 4) 특별 구조조정 자금지원(Special Structural Adjustment Loans, SSALs), 5) 준 국가적 조정 자금지원 및 (Subnational Adjustment Loans, SNALs) 등이 있었다.

⁴³- Daniel Morrow, *Understan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 Introduction*, p. 8.

경의 개선을 위해 수원국과 정책 및 제도 개발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만들
고자 한다. 국제금융기구는 대부분의 원조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원조 집
행의 기획 및 실행 단계에 깊이 개입하는데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사이클
(project cycle)을 따른다.

- 1) 수요조사: 원조의 주요 형태, 요소, 범위에 대해 수원국 정부측과 협의
- 2) 준비: 주요 투자 부분과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정책 변화, 수행 등의
제도 조정
- 3) 사전 평가: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최종 분석 및 수행을
위한 제도적 역량에 대한 진단
- 4) 승인: 원조공여기구에 의한 공식 이행 약속
- 5) 이행 및 감독: 동의 조건 이행 및 감독을 위한 수여국 스태프(staff)의
정기적 방문 및 프로젝트 변경에 대한 동의
- 6) (사후)평가(evaluation):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시
사점 도출

프로젝트 형태에 따라 기간은 차이가 나며 보통 사전 승인 기간까지는
6~18개월이 소요된다. 기간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보다 장기
간이 걸린다. 보통 국제금융기구는 재화 및 서비스 조달과 관련된 지참을
마련한다. 이는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 차단, 저가에 보다
나은 질의 재화 및 서비스 구입 등을 위해서다.⁴⁴

프로그램원조의 경우 원조제공측은 수원국이 수행해야 할 정책과 제
도 개혁에 우선적 관심을 두며, 통상적으로 수원국이 이러한 개혁을 수행

⁴⁴ - 거액의 계약은 국제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도 하나 양자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여국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연계원조'라고 한다. 개발원조위
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통계에 따르면 전체 ODA의 약
7% 정도가 '연계원조'로 집계된다. *Ibid.*, p. 8.



하는 데 필요한 (단기적) 비용을 감당하기도 한다. 때로는 수원국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을 보상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프로그램원조의 경우도 프로젝트원조의 사이클을 따르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바람직한 개혁프로그램에 주목한다. 프로그램원조의 경우 ‘이행 조건’이 수반되며 이는 곧 수원국과 공여국/기구 간에 금융지원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한 동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수원국이 약속 이행에 실패할 경우 지원을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세계은행은 기술지원을 위한 유무상지원이나 투자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⁴⁵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개발정책운영은 세계은행과 북한 사이의 신뢰 수준이 관건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 중국도 초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개입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동반하는 금융지원을 배제하여 왔다.⁴⁶

3. 금융지원 원칙과 규모: 북한 적용

공적개발금융(Official Development Finance, ODF)은 상환방식에 따라 그 형태가 분류되는데, 크게 세 가지, ‘공적개발지원(ODA)’, ‘공적원조(OA)’, ‘기타 공적개발금융(Other ODF)’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ODA가 전체 지원액의 약 85%를 차지한다.⁴⁷ ODA는 대략 1인

⁴⁵- Daniel Morrow,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p. 11.

⁴⁶-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p. 56.

⁴⁷- OA는 주로 체제전환국 중 중-상위 소득국가에 집중되며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ODF가 그 나머지 5% 정도를 차지한다.

당 국민소득 900달러 이하인 나라에 집중되며 무상원조 혹은 양허성차관의 형태로 지원된다. 이미 다른 금융재원으로부터 차관 도입이 가능한 나라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들 국가는 비양허성차관을 도입해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차관도입으로 ODA가 해당될 수 있다. ODA는 양자⁴⁸ 혹은 다자간 지원의 형태를 띤다. 다자 지원기구의 경우 최대 ODA 지원은 세계은행의 일부인 국제개발기구(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를 통해 이뤄진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2004년 세계은행 대출의 대부분은 IDA를 통해 이뤄졌다.

<표 IV-1> WB의 최근(회계 연도 02~05) 대출 규모

	2002회계연도	2003회계연도	2004회계연도	2005회계연도
	실제	실제	실제	예정
	백만 US\$	백만 US\$	백만 US\$	백만 US\$
프로젝트차관	300	106	591	255
개발정책차관 (조정차관)	500	190	190	700
총액	800	296	781	955
그 중(IDA 금액)	800	296	731	600
그 중(IBRD 금액)	-	-	50	355

자료: World Bank Group, "Working for a world free of poverty," p. 24.

⁴⁸-양자 지원기구는 곧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서유럽 여러 나라의 정부 기관들이 해당된다. 다자지원기구라 함은 다자개발은행, 즉 세계은행, ADB를 비롯해 EC, UN 기구(UNDP 등) 등이 해당된다. ODA의 대부분(2/3)은 양자지원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중 80%가 무상지원의 형태로 지원된다. ODA 최대 지원국은 미국과 일본이나 EU가 전체 ODA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 내 주요 기관으로는 USAID이며,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이 특별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 예컨대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제협력은행이 최대 지원 기구이며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IDA 기금은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지원되며 40년의 상환기간과 약 0.5%의 서비스 비용이 추가된다. 최근에는 20% 이상의 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기관은 세계은행그룹 IDA이다. IBRD 차관은 일반적으로 15~20년 만기의 6~7%의 이율이며, IDA 신용대부는 0.5~1%의 연간 수수료를 제외한 이자를 따로 물지 않으며 35~40년 만기이다. IDA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25달러 이하(2007회계연도 기준)인 국가나 IBRD 대출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에 금융지원을 한다.

IDA 차관은 특히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제공된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2006년 북한의 1인당 GNI가 1,108달러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이나,⁴⁹ 국제금융기구 가입준비과정을 통해 보다 정밀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IDA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IDA는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전체 자금지원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금액은 공여국들의 재원보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3년마다 열리는 IDA 재원보충회의(replenishment)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진다. 2005년(7.1)~2008년(6.30) 회계연도를 다루는 14차 IDA 재원보충회의(Replenishment)에서 IDA는 81개의 자격국가들을 대상으로 할당되는 340억 달러의 신규재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⁵⁰ 14차 회의의 특징은 무상원조비율이 크게 상승한 점이다. 과거에는

49- 한국은행, “2006년 북한경제성장률 추정결과,” 한국은행 보도자료(2007년 8월 17일).

50- 국제개발협회(IDA)는 2005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4차 재원보충회의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약 340억 달러의 신규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회원국들은 동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IDA 회원국들로부터 180억 달러, IDA 자체재원으로부터 160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5년 3월호), p. 107; 만약 이 기간 안에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하게 된다면 북한도 포함될 수 있다.

전체 재원보충 규모의 21% 한도 내에서 기술지원, 빈곤·채무압박 국가 지원, 분쟁종식국 지원, 자연재해 복구, HIV/AIDS 퇴치 등 ‘특정 지원분야’에 대해서만 무상원조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 한도가 없어지고 수원국의 채무압박(debt distress) 수준에 따라 무상원조가 자동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무상원조비율이 약 3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은 보다 많은 개발재원을 무상원조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IDA 지원자금의 양허성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⁵¹

일반적으로 IDA는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성과기준평가(PBA: Performance based allocation)시스템을 따른다.⁵² 이러한 자금 할당은 보다 나은 정책과 제도적 요건들을 갖춘 국가에서 지원이 최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스스로 좋은 정책을 통해 노력하는 국가에서만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이라는 기본적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IDA는 할당을 위한 공식(formula)을 갖고 있다. 이 공식은 각국의 정책 수준과 제도적 환경에 상당한 비중을 두며, 특히 경제정책의 운영(governance) 수준과 IDA프로젝트 이행 기록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 공식은 각국의 1인당 GNI에는 비중을 덜 두고 있다. PBA시스템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세계은행은 국가성과·제도평가지표(CPIA)를 통해 각국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 CPIA점수는 경제운용능력과 진행중인 IDA 프로젝트의 이행 점수와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국가이행등급(CPR: Country Performance Rating)과 인구수 그리고 1인당 GNI가 각국의 IDA 할당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성과배분주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1인당 기준에 따라 IDA로부

⁵¹ - 위의 책, p. 107.

⁵² - Daniel Morrow,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p. 6.

I
II
III
IV
V
VI

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최근 PBA 등급의 상위 20%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1인당 12달러의 금액을 받았다. 그리고 하위 20%의 국가들은 평균 1인당 2.4달러를 지원받았다. 결국 이것은 경제 및 제도적 개혁의 수준에 따라 금융지원 규모가 달라짐을 보여준다.⁵³

<표 IV-2> 정책 건전성과 ODA 및 IDA 일인당 원조액⁵⁴

	ODA (\$)		IDA (\$)	
	1990	1997~98	1990	1997~98
Good policy	38.8	28.0	4.7	6.5
Bad policy	44.1	16.4	2.0	2.3

<표 IV-2>는 수원국의 정책 건전성과 ODA 지원액의 추이를 보여준다. 정책이 건전치 못한(bad policy) 나라의 경우 ODA 1인당 원조액이 1990년 1인당 44.1달러에서 1997~1998년 16.4달러로 크게 감소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IDA의 경우에도 건전한 정책(good policy)을 펼 나라의 경우 1990년 4.7달러에서 1997~1998년 사이 6.5달러로 상승했다. 북한이 경제개혁 이행 속도가 느리고, 실적이 없어 PBA 등급의 하위 20% 국가에 포함될 경우 최소 2달러에서 최고 5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 전체 인구가 2,300만 명이므로 해마다 4,600만 달러 내지 1억1,500만 달러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세계은행 주주들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보다 많은 금액을

⁵³- *Ibid.*, p. 6.

⁵⁴- David Dollar, "Some Thoughts on the Effectiveness of Aid, Non-Aid Development Finance and Technical Assist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13, No. 7 (October 2001), p. 1042.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IDA의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금액과 향후 상향조정 여부는 북한의 경제개혁속도와 IDA의 프로젝트의 이행기록 두 가지에 달려 있다.

IMF 또한 5~10년 만기의 다양한 차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산하 기구인 빈곤감축 및 성장 지원기관(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이 세계은행의 IDA의 역할을 담당하며, IDA와 마찬가지로 1996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925달러 이하의 개발도상국에게 차관을 제공한다. IMF는 다소 성격이 다른 지원을 하고 있다. IMF지원은 단기 거시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IMF 차관은 상환 기간 5년에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며, 이에 더해 차관 수원국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거시 경제 정책의 변화를 이행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IMF는 빈곤감소 및 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이라는 저소득국가의 경제 정책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부분 이외의 영역에서도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주요 쟁점 및 과제

1. 주요 쟁점과 시사점

일부 국내 선행연구⁵⁵는 IMF ‘가입조건’과 관련하여 IMF에는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다거나, 북한이 주요 경제지표를 ‘IMF 가입 전’에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북한의 IMF 가입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은 IMF 가입조건을 상당히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전 경험을 보면 가입이전 단계에서 통계정보의 공유수준은 각 나라마다 달랐다. 북한의 경우 국제금융기구가 가입 협상과 병행하여 통계수집 및 분석활동과 관련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가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리스트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⁵⁶ 가입 심사과정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경제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자료제출과 통계 수집 및 분석활동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IMF 가입 이후 회원국은 경제전반에 대한 통계제출과 IMF와 회원국 간의 거시경제정책 조율 등 정책협약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⁵⁷ 경제지표제출 문제나, 정책과 제도의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는 북한 스스로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과제이다.

⁵⁵ - 선행연구는 1980년 IMF, 세계은행에 가입한 중국이 당시에는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한 국가가 아니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중국이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1979년부터 시작된 IMF 출장팀과의 가입 협상시 주요 의제는 중국의 IMF 투표권 확보 문제, 대만 축출 문제, 중국에 공여할 양허성 자금지원 확보문제 등 중국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키기 위한 유인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차원의 협상이었다. 통계의 정확성이나 통계제출의 성실성 등이 IMF 가입의 ‘전제조건’이 된 경우도 없었다. 구소련 붕괴 후 IMF에 가입한 중동구 체제전환국들의 경우는 IMF 가입 신청시 기초적인 통계도 작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은 가입 후 15년이 지난 지금도 IMF로부터 통계작성에 대한 기술훈련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장형수,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p. 47.

⁵⁶ - 세계은행 chief economist와의 인터뷰(2007년 12월 1일).

⁵⁷ - 안광명,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p. 181.



가. IMF 가입과 경제지표 제출 문제

국제금융기구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원조 그리고 기술지원 외, 수원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함께 수행하는데 이는 수원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보다 나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세계은행의 경우 이런 분석활동은 ‘Economic and Sector Work (ESW)’라 불리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쏟고 있다. 대부분의 수원국들은 세계은행의 ESW 임무가 자신들의 경제 개발 노력에 최대의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분석에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은 수원국 정부, 대학, 연구 기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다.⁵⁸ 국제금융기구는 대부분의 원조공여국과 마찬가지로 수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작업, 프로젝트, 프로그램원조의 결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을 마련한다.

잠재적 원조공여자 입장에서는 지원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북한의 에너지 및 수송 관련 공적 인프라의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실질적 자산 상황 및 평가에 대한 세부 목록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도시 인프라와 관련하여 수도, 위생 및 주택과 연관된 평가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는 북한 정부와 공동으로 공적투자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지원이라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⁵⁸- Daniel Morrow,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p. 9.

I
II
III
IV
V
VI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계가 중요한 것은 초기 분석의 중요성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는 중동부 유럽과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체제전환 초기단계에서 빈곤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개별국가와 접촉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여자는 정부가 빈곤수준을 관리하고 빈곤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⁹ 가구별 생활수준에 관한 설문조사와 다른 도구들이 전반적인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사회적 지원의 대상을 보다 잘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후자의 경우 체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세계은행은 정부가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했다. 이것이 정책 분석 및 분석지도에 근거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대상 선정의 기초가 되었다.⁶⁰

세계은행이 베트남과 러시아에 접근했던 사례는 북한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베트남에 개입할 때 가장 기초적인 가구조사(household survey)에서 통계수집 및 분석활동을 시작했다. 세계은행의 생계수준측정조사(Living Standard Measurement Survey)를 베트남 현지에 맞게 수정하여(customized) Vietnamese Living Standard Survey (VLSS)를 조사틀로 만들었다. 3단계로 나눠 접근하였는데,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인 실태조사, 예컨대 영양상태, 일

⁵⁹-The World Bank Operation Evaluation Department(OED), *Economies in Transition: An OED Evaluation of World Bank Assistanc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4), p. 39.

⁶⁰-Daniel Morrow, "Aid to Transition Economies: Lessons of Experience," Proceedings for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ul (July 6-7, 2005), pp. 18-19.



일섭취량 등에 대한 조사와 다음 단계에서 심도있는 가구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이 두 단계를 거친 후 정부부문과 거시경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정부부문과 거시 경제 부문도 처음에는 매우 제한된 정보만 요구했다.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예산 규모로는 2/3 정도였으며, 그것도 베트남 정부가 공개하기를 원하는 정보만을 우선 받아들였다. 이후 전체 예산의 95% 수준까지 요구했다. 물론 초기에는 예산 집행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듣기만 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배경설명(background information)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1990년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를 방문하여 그들의 경제계획에 대해 토론을 했다. 처음에 세계은행에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발표가 끝난 후 “이런 이런 부문에는 이리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했다. 특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고려가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을 알려 주는 것으로 활동을 제한했다. 베트남의 경우도 초기에는 구체적인 자문을 해주기보다 베트남에 대한 여러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국제금융기구 관계자들도 북한의 예산 지출과 국가계획은 매우 예민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부문에 대한 작성의 과정(process)은 토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세계은행의 한 전직 임원의 아래와 같은 조언은 참고할 만하다.⁶¹

⁶¹- 세계은행 전 Chief Economist와의 인터뷰(2007.12.1).

I
II
III
IV
V
VI

“초기에 조심해야 할 것은 결과물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A라는 정책을 만들 때 이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았느냐, 혹은 고려해야 한다” 등과 같은 정책 형성 “과정”에 중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이는 국가주인 의식(country-ownership)과 정통성(legitimacy)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이 특정 프로젝트를 먼저 구상하는 것보다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을 이러한 토론의 과정에 적절히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최소한 민감한 정부, 군사부문 외 비정치적인 일반 경제, 사회적 통계 분석 및 공유가 필요하다. 점차 정부관련 및 거시경제 통계 공유가 요구된다. 일반주민의 영양상태 등 가구조사, 농업, 에너지관련 통계로부터 경상수지, 무역규모, 외자유치규모, 공식/비공식환율, 대외부채 등도 국제금융기구에서 중요시하는 통계들이다. 북한의 통계수집 및 분석능력 결여 문제도 북한이 개선하기를 희망한다면 국제기구나 한국의 지원역할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

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정책·제도의 문제

국제금융기구와 수원국 간 건전한 대화는 성공적인 원조 집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국제금융기구는 수원국에 대해, 수원국은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역량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산적 대화는 수원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구측이 서로를 협력자로 인식하고, 공통의 목표와 장기간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공적개발금융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체 투자액과 비교해 보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국가 또는 소국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나 국내저축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민간 투자는 약간의 변동은 늘 있으나, 주목할 대목은 건전한 정책과 제도 환



경을 갖춘 나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⁶²

최근 국제금융기구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은 개발원조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과거의 안보중심에서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국제규범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는 통계와 관련된 협력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는 북한이 현 국제금융질서 아래에서는 IMF, WB, ADB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경제전반에 대해 인정받기 전에는 북한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투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작업과 동시에 기금을 사용할 북한 당국의 제도적 수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지원자금사용 방법과 공공사업에 대한 관리능력은 공여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즉 제도적 평가는 앞서 지적한 공적 투자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공여자는 어떠한 조건과 감독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고 향후의 자금제공과 연결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공된 자금의 군사적 전용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므로,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도 및 투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담당하는 그룹은 이 과정에서 복수의 공여자가 다양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상호간에 수용가능한 표준적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지만 금융지원의 규모와 개입의 정도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제금융기구가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책 개입의 수준을 높이려 할 것이다. 중국은 초기 회원자격 획득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적 개입 또는 구속력을 최소화한 나라이다. 당시

⁶²-윤대규·임을출, 『북한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 262.

I
II
III
IV
V
VI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분야는 다양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치중하였고, 제도적 또는 구조적 측면의 개선 역할은 한정되었다. 구조개혁을 조건으로 하는 IMF의 지원은 가능한 자제하고, 세계은행의 지원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시켜 국제금융기구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금융기구가 중국의 사례를 따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은 IMF에 가입할 당시 세계 9위의 분담액을 냈고 이에 따라 IMF와 세계은행에 집행이사를 파견함으로써 발언권을 갖게 되었다. 북한이 중국과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⁶³

정책과 제도는 원조 효과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래서 원조 제공자인 국제금융기구는 자금 지원을 하기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인적·제도적 수용능력을 분석하고 파악하려 한다. 정책 건전도에 대한 측정은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국가제도정책평가(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CPIA)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CPIA는 거시경제 정책, 구조적 이슈들, 공공 부문 관리 및 거버넌스, 사회 통합 등에 대한 20여 개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평가된다.⁶⁴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수용능력 개발은 해당 지역의 국가가 자신들의 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필요한 인간, 제도,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수용능력에 대한 분석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개발 방향이나 전략,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 지출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⁶³-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pp. 6-7.

⁶⁴- David Dollar, "Some Thoughts on the Effectiveness of Aid, Non-Aid Development Finance and Technical Assistance," pp. 1040-1041.

또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자원지원은 자금지원에 따른 이행조건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행조건은 원조제공자가 재정적 지원을 할 때 내세우는 일련의 정책적, 제도적 요구사항이다. 국제금융기구가 내세우는 여러 이행조건들 가운데 핵심은 공공거버넌스의 개선에 대한 요구이다. 공공거버넌스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공적 관리능력을 말하며, 이는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강조되고 있다.⁶⁵ 각 나라의 부패를 감시하는 국제투명성기구는 앞으로 북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국제사회진출을 노리는 북한으로서는 부패방지과 국가 투명성 확보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⁶⁶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더라도, 개혁 수준이 낮을 경우 원하는 수준의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로부터의 양허성 차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북한의 경제개혁 속도와 IDA 프로젝트의 이행기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2. 향후 과제

북한이 보다 조기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들을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세계은행과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형성은 북한 스스로 일정 수준의 추진역량을 구축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아래에서 제시한 과제들은 남한과 북한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사회가 담당할 몫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목

⁶⁵- 입을출·최창용, “경제개혁과 이행조건 그리고 공공거버넌스,” 『통일정책연구』, 제 16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56.

⁶⁶- 『Radio Free Asia』 (2007년 11월 29일).

I
II
III
IV
V
VI

표로, 그 이전 단계 혹은 동시에 실현가능한 정책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가. 기술지원의 조기 실현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라고도 불리는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의 목적은 국제적인 지식, 규범과 경험의 전수에 있다. 프로젝트원조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선택과 개발을 위한 전문성 제공이 해당되며, 프로그램원조의 경우보다 광범위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기획, 수행, 평가와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역량 강화 외에 기술지원은 개발 정책과 개혁 프로그램의 작성과 이행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 결정자와 담당자들의 개인적 역량 강화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지원은 훈련, 교육, 자문서비스, 워크숍, 세미나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기술지원은 투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 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술지원은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환경 개선, 경제 개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집행을 돕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 역량의 강화에 기여하며, 수원국 정부의 양자 혹은 다자원조기구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술지원은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무상지원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북한이 참고할만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자체예산을 통한 집행부의 연구사업(이사회 승인 불요)과 신탁기금설치를 통한 지원(이사회 승인 필요)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추진환경이

조성되면 북한의 경제구조 강화, 개혁 중심역할을 담당할 인력양성을 위해 기존의 중국,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⁶⁷ IMF도 북한의 지원요청을 전제로 집행부 자체예산을 통한 대북 기술지원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경우 통계수집 및 분석 역량을 기르는 것이 우선적 기술지원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나. PRSP와 MDGs의 연계⁶⁸

국제금융기구는 수원국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작업, 프로젝트, 프로그램원조의 결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가지원전략’을 마련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향후 3~5년간의 전략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과 원조의 형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서는 대외부채 경감을 위한 협상수단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은 수원국과 대화를 통해 향후 지원계획을 작성하며, 수원국의 전반적인 정책과 제도적 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원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개발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전략을 작성하고자 한다.

반면에 수원국에 대해서는 빈곤감소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의 작성을 요구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향후 3년간의 개발전략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근거 등이 담기게 된다. PRSP는 매우 중요한 전략 보고서로서 수원국의 개발전략의 향상뿐만이 아니라 지원에 대한 보다 나은 통제권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개발전략보고서는 보통 수원국 정부의 참여과정을 거쳐 작성되며 그 목적은

⁶⁷ - 교육과정은 거시 경제(국민계정, 통계), 지배구조(공공재정, 조달), 사회부문(보건, 교육, 사회보장, 노동), 금융부문, 농업지역개발, 기업환경 개선 등이 있었다.

⁶⁸ - 기술지원과 PRSP의 관계는 임을출·최창용. “북한 개발지원 방향과 전략: 기술지원과 PRSP,”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참조.

‘수원국의 주도권 (ownership)’에 있다. 이는 수원국 자체 내에서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이 보고서는 빈곤감소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성장계획을 담고 있어야 하며, 거시 경제에 대한 정책틀을 포함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투자계획과 원조 요청액 등에 대한 재정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구는 이러한 수원국의 전략에 부합하는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러 지원 활동이 상호협조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계은행과 IMF는 모든 저소득국가로 하여금 금융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이 전략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선 북한이 스스로 PRSP를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⁶⁹

PRSP 작성시에는 MDG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북한이 작성할 개발전략의 우선적 준거 지표로 2001년 UN이 수립하고 선포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 역시 UN가입국이므로 UN에서 합의된 방식으로 개발전략을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에 유엔이 추진중인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개도국 회원국에 대해 의무적으로 MDGs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MDGs는 보건의료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인적 자원을 축적하고 식수, 위생, 자연환경, 에너지, 운송 및 통신기술이 갖추어진 필수적인 기반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빈곤감소, 고용창출, 정보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남북협력뿐 아니라

⁶⁹- 빈곤감소전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위의 책뿐 아니라 임을출, “북한의 개발협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원칙과 방향』, 평화재단 주최 제9회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2007년 10월 26일)참조.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견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국제적 연대와 교류의 시금석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유엔을 비롯해 국제금융기구와 국내외 NGO의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ODA를 보다 많이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다.

개도국 가운데는 정부차원의 PRSP를 MDGs와 연계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MDGs를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국민생활개선정책에 적용하여 국가종합개발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MDGs의 목표달성에 있어서 절대빈곤과 기아퇴치는 수원국의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다. 대부분의 수원국들은 공여국의 원조에 의존하거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 분야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적절한 정책수립과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전략과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가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UN 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대부분의 수원국들은 유엔기구 또는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에 의지하여 정부차원의 빈곤감소종합프로그램 즉 PRSP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ODA지원을 통해서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개발전략은 향후 북한이 IMF, 세계은행과 정상적 관계를 맺는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확장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 개발전략을 수립·집행할 수 있다면, 기존의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체제개혁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과 베트남 등의 경험에서도 충분히 실증된 바 있다.

다. 특별신탁기금의 조성

앞에서 제시한 가)와 나)의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세계은행은 빈곤감소전략신탁기금(Poverty

I
II
III
IV
V
VI

Reduction Strategy Trust Fund, PRSTF)을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신탁기금공여는 말 그대로 기금 공여자로부터 신탁을 받아 세계은행이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세계은행 자체의 계정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따로 관리된다. 이것은 특별한 개발 필요성(high priority development needs), 즉 기술지원이나 자문, 채무구제, 전후 복구, 공동 재정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탁된 기금의 관리자(administrator)로서 기금 공여자를 대신하여 특정한 프로젝트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대부분 세계은행의 조직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되는 방식이다.⁷⁰

특별신탁기금은 대부분 기술지원에 충당되는 일반신탁기금과는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하부구조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 세계은행의 IDA 차관과 동일한 자금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데에는 물론 주요 공여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비용이 들겠지만, 현 시점에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조정비용보다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북한의 향후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에 따라 특별신탁기금 구상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회원국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의 사례들⁷¹에 비추어 볼 때 북한

⁷⁰ - The World Bank, *Guidelines and Operating Procedures for Application, Approval, and Execution of Grant, Japan Social Development Fund (JDSF)* (The World Bank, 2004) 참조.

⁷¹ - 1993년 세계은행은 비회원국인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자지구 개발을 위한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일에 참여한 바 있다. 2000년 6월까지 가자지구 개발을 위한 신탁기금은 4억 달러가 조성되었다. 이는 세계은행의 이익금 3억 달러 및 기타 공여국 원조로 이루어졌으며, 팔레스타인에서의 다양한 개발프로젝트에 개발기금



은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 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이와 유사한 접근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⁷²

라. 국제자문그룹의 구성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세계은행에 관리를 위탁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 유엔기구, 비정부단체 (NGO) 등 관련 주체를 포함시켜 국제자문그룹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한국은 자문그룹의 설립 및 운용 그리고 원조 조정에 있어 세계은행과 함께 주요 공여국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 자문그룹은 첫째, 다수의 공여국과 협상할 외교능력이 부족한 수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집합체로서 기능한다. 둘째, 공여국 및 기구의 입장에서 다자간 정책대화 메커니즘으로서 중복된 지원을 방지하고 공여된 자원의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한다. 셋째, 공여국 및 수원국 모두에게 양자간 대화채널보다 국내정치적 가변성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 UNDP 활용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의 회원이 주는 혜택과 회원가입 이후 감당해야 할 현실적 책임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록 국제금융기구들이 그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지만, 북한 관료들을 국제금융기구의

로 활용되었다. 또한 1999년에 세계은행과 ADB는 공동으로 동티모르를 위한 신탁기금을 조성하였다. 기금의 조성에는 세계은행의 수익금 및 일본, 포르투갈 및 호주 등의 공여국이 참여했다. 당시 동티모르는 세계은행 및 ADB의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은 동티모르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⁷²- 신탁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장형수·박영근,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 개발 지원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을 참조.

I
II
III
IV
V
VI

행사에 초청하거나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프로그램, 예비경제조사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는 UNDP와 함께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⁷³

UN이 베트남에서 수행했던 역할과 앞으로 북한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는 중요한 유사점이 존재한다. 1986년 이래로 베트남은 공산주의라는 일당체제를 고수하면서 중앙집권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제도적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베트남은 북한이 그랬듯이 초기에 장기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따르기보다는 ‘실천을 통한 학습’이라는 점진적 변화를 추구했고, 미국의 제재조치로 국제금융기구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저지당했다. 1975년~1993년 사이 UN은 UNDP를 통해 기술지원, 훈련, 베트남 정부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베트남 주재 UNDP는 1990년까지 베트남의 경제회생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같은 해에는 ‘경제관리능력 강화’ (Strengthening Economic Management) 조치를 취했다. 이는 중견 정책 결정자들을 시장경제의 기능에 익숙하게 만들어 경제개혁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었다.⁷⁴ UNDP는 베트남 정부와 1993년 전까지 28개의 경제관련 구조개혁 보고서를 작성했고, 1985년~1997년 사이에는 훈련, 역량강화에 7,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1990년대 초 베트남에 국제금융기구 등 다자기구의 개입이 가능해진 이후, 베트남 경제가 비교적 빠르고 성공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경제체제 전환의 토대를 제공했다. 1979년부터 대북지원 활동을 시작한 UNDP는 긴급구호활동

⁷³- Peter Beck & Nicholas Reader, “Regional Actors’ Role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Proceedings for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ul, July 6-7, 2005), p. 11.

⁷⁴- Gus Edgren and Dharam Ghai, “Capacity Building for Eradicating Poverty in Vietnam: An Impact Evaluation of UN System Activities in 1985~1997,” (UNDP, Hanoi, February 2001).

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면서 2005년 초에는 2,000만 달러 규모의 체제 이행 프로그램(\$20 million transition program)의 초기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정부와 협상을 한 바 있다.⁷⁵

바. 법제도 개혁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시 대상국의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각종 법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⁷⁶ 북한처럼 외부 경제와 단절된 상황 하에서 국가의 주도하에 제한적으로 외국과 무역이나 거래를 하는 사회주의 권 국가들이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되어 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체제의 법질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다. 그 동안의 체제전환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제금융기구들의 지원이 있을 때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다. 더구나 법제도 개혁은 기술지원의 형식으로 회원국 가입 이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소련이 회원국이 되기 전에 받았던 무상지원의 다른 방식인 ‘기술협력합의’⁷⁷도 가능할 것이다.

⁷⁵- Peter Beck & Nicholas Reader, “Regional Actors’ Role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p. 11.

⁷⁶- 안광명,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p. 176.

⁷⁷- 구소련 말기 당시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1년 세계은행은 ‘기술협력합의’의 이름으로 당시 비회원국이던 소련에 3,0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지원을 한 것이다. 이때의 합의 내용에는 법적 기술지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새로이 출현한 독립 국가들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벨라루스 등에 계속 지원되었다. 이때의 법적 기술지원은 이러한 독립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잘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하는 데 주로 집중되었다. 예를 들면, 은행법, 외국인 투자법, 사유화법 등이다. 윤대규, 『법제도개혁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관한 연구』, p. 40.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결 론

지금까지 비핵화조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이 시작될 경우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이며, 금융/비금융지원이 어떤 조건, 원칙아래 제공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정식 회원국 가입지원을 위하여 단계적 혹은 동시적으로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국제금융기구 개입의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의 규모는 많지 않을 뿐더러, 이는 북한의 제도나 정책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최근 국제금융기구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은 과거의 안보중심에서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국제규범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제도나 정책을 개혁하는 수준이나 정도에 따라 지원의 범위와 규모가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규모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제도나 정책 개선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원칙 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폐기를 조기에 이행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회는 정치적 원조차원에서 보다 많은 금액의 자금을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및 정책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정치적 성격의 자금지원이 북한이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빈곤퇴치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은 많은 체제전환국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다. 자금의 제공만으로는 북한이 처한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최종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초기 단계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외자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실제 경제개혁 전략의 수립 시점에서부터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공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 및 제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중국, 베트남 사례 등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이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에 대한 가치는 직접적 금융지원 규모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최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보면 수원국에 대한 직접적 재정이전은 순서상 마지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국제금융기구의 북한개입 시나리오에 따르면 직접적 재정지원보다는 비금융지원 성격을 가진 기술지원이 선행될 것이다. 따라서 가입준비 단계 혹은 이전단계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을 최대한 조기에 이끌어내어 법제도의 개선, PRSP와 같은 국가개발전략의 작성, 통계 수집분석 능력 등 국가, 조직 및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세계은행, IMF의 정책조언, 원조 통합 조정 능력 및 원조의 촉진 기능과 북한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역할 등에 주목하고,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대목은 많은 체제전환국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조적, 제도적 변화는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참을성과 유연성을 갖고 북한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초기단계에서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국제금융기구가 북한 개발지원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위에서 언급한 과제들을 주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역량을 쌓을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북한지원은 단순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지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견인해야 한다. 한국이 국제

I
II
III
IV
V
VI

금융기구의 북한 경제개발지원 등 국제협력을 능동적으로 견인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 노력과 더불어 국제협력 추진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이뤄지면 북한 체제가 보다 역동적인 시장주도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북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국제금융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IMF. *Review of the Fund's Experience in Governance Issues, Policy Development and Review*. Washington D.C: IMF, 2001.

Shihata, Ibrahim F. I. *Contemporary Reform: Essays on Legal, Judicial and Other Institutional Reforms Supported by the World Bank*. Kluwer Law International, The Hague, 1997.

The World Bank Operation Evaluation Department(OED). *Economies in Transition: An OED Evaluation of World Bank Assistanc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4.

The World Bank. *A Guide to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3.

_____. *Guidelines and Operating Procedures for Application, Approval, and Execution of Grant, Japan Social Development Fund (JDSF)*. The World Bank, 2004.

_____. *IDA Eligibility, Terms and Graduation Polic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The World Bank, Jan. 2001.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윤대규. 『법제도개혁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일중동북개발협회. 『조선북부항만시찰단보고서』. 1992.3.

임을출·윤대규. 『북한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장형수·박영곤.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5년 3월호.

2. 논문

Beck, Peter & Reader, Nicholas. “Regional Actors’ Role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Proceedings for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ul, July 6-7, 2005.

Dollar, David. “Some Thoughts on the Effectiveness of Aid, Non-Aid Development Finance and Technical Assist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13, No. 7. October 2001.

Edgren, Gus and Ghai, Dharam. “Capacity Building for Eradicating Poverty in Vietnam: An Impact Evaluation of UN System Activities in 1985~1997.” UNDP, Hanoi, February 2001.

Mizuno, Mitsuru. “Japan’s Development Assistanc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co-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Seoul, Korea, July 6-7, 2005.

Morrow, Daniel. “Aid to Transition Economies: Lessons of Experience.”

Proceedings for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ul, July 6-7, 2005.

_____. “Possible World Bank Assistance to North Korea: Issues and Challenges.” Proceedings for 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rth Kor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oul, July 6-7, 2006.

Mosley, Paul. and Eechhout, Marion J. “From project aid to programme assistance.” *Foreign Aid and Development*. Routledge, NY: Taylor & Francis Group, 2000.

The World Bank Group. “Working for a World free of poverty.” presentation for participants of Diplomatic Course at the Foreign Services Academy. March 2, 2005.

임을출·최창용. “경제개혁과 이행조건 그리고 공공거버넌스.”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7.

_____. “북한 개발지원 방향과 전략: 기술지원과 PRSP.”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임을출. “북한의 개발협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원칙과 방향』. 평화재단 주최 제9회 남북화해와 평화네트워크 워크숍. 2007.10.26.

장형수.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 비전과 전망』. 산업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2007. 11.22.

케네스 강(Kenneth Kang).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Assistance to North Korea.”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남북

협력』. 통일연구원·UNESCO 한국위원회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자료. 2001.9.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의 국제금융체제복구에 따른 국제원조 재원현황 분석.” 『한국경제주평』. 통권 제274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7.

3. 기타자료

<<http://www.imf.org/external/about.htm>>.

<<http://www.worldbank.org>>.

U.S. Senator Sam Brownback Press Release. December 10, 2007.
안광명(재정부 경제협력국 개발전략심의관).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한국수출입은행·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주최 제3회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을 위한 워크숍 토론문. 2007. 11.29.

한국은행. “2006년 북한경제성장을 추정결과.”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7.8.17.

『AP』.

『Radio Free Asia』.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권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수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외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11)-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4	東北亞區域合作的新聯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9,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어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 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설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KINU 정책연구시리즈 07-06

이 책은 국제산림경영인증(FSC)마크를 획득한 무염소 펄프 친환경용지 띠또레포(표지)와 어라이트(본문용지)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에 유해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www.kinu.or.kr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 임을출 (林乙出)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북한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2인 편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월کم투 개성공단: 역사, 쟁점 그리고 과제』 (서울: 해남, 2006)

『악의 축과의 대화: 북미 핵·미사일 협상의 정치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